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근거 마련〉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5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관 등(정당 포함)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근거 마련〉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5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우재준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우재준의원안】 (지방공무원법)	3
II.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검토의견	6

I. 개 요

【우재준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관의 보좌관 등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

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우재준의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공공단체·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국가공무원법-안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공공단체·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지방공무원법-안 제25조의7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국 가 공 무 원 법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u>공공단체</u> ,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u>기관</u>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 ----- ----- <u>공공단체</u> <u>· 정당</u> ----- ----- -----. ② ----- ----- <u>기관 및 정당</u> 은----- -----.

구분	현행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신설>	제25조의7(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임용권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행정기관·공공단체·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정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토의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¹⁾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등 인사행정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 인

1)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⑪ (생략)

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임용권자로 하여금 정당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협조 요청의 대상 기관에 “정당”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임용권자가 “정당”을 포함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당에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673호,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이 관련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음.²⁾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673호,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생략) <신설>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8조의3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7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경우, 정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또는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³⁾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임용예정기관(또는 임용권자)별로 실시하고 있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삭제 <2020. 12. 31.>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2020. 12. 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는 바, 인사혁신처장 또는 임용권자의 자료제공 등 협조요청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⁵⁾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정당”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한 조회에 관한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당법」에 마련하여 해당 법적 근거에 따라 임용예정기관(또는 임용권자)별로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시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

-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가공무원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협조요청은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각 기관별 인사관리 사항에 해당하는 정당 가입 여부의 조회와 이를 위한 협조 요청의 주체는 개별 임용권자 또는 소속 기관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부에 관한 자료 등을 정당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공무원법」 제8조의3은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당 가입은 징계 등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당법」은 당원명부의 열람 및 조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정당가입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과 함께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임용권자가 인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